

#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 ]양도 [ ]양수 신고서(신고확인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성명)	연락처	
양도인	상호(성명)	연락처	
	주소		
양수인	상호(성명)	연락처	
	주소		

생물정보	학명	수량	부속서	형태	용도	양도사유	개체식별번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양도 [ ]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양도하려는 종이 수입허가된 종에서 인공증식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양수하려는 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4. 사육시설 등록증 사본(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용계획서, 양도·양수 계약서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업적 용도가 아닌 국제적 멸종위기종만 해당합니다) 1부 6.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제 호

수입 ·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 ]양도 신고확인증  
[ ]양수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인]

귀하

처리절차

